


투명성 보고서

	(제 21 기)	
사업연도	2021.04.01	부터
	2022.03.31	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의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합니다.


2022 년 6월 30일

회계법인명 : 이촌회계법인

대표이사 : 김 명 진 (서명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포스트타워

(전화번호 : 02-761-0717)

작성책임자 : 소속 품질관리실 직위 품질관리실장 성명 안 해 정 (서명 )

(전화번호 : 02-761-6205)

정정신고(보고)

2023년 11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회계법인사업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06.30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1-나.	오기재로 인한 정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1003(여의 도동)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우리는 농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및 작성책임자로서 이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사업보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증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이 촌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김 명 진



작성책임자 안 해 정



작성책임자 노 재 현 (서명)



Independent member
Morison Global

이촌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 21 기)

사업연도	2021.04.01	부터
	2022.03.31	까지

증권선물위원회 귀중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회계법인명 : 이촌회계법인

대표이사 : 김명진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포스트타워)

(전화번호 : 02-761-0717)

작성책임자 :	소속	품질관리실	직위	품질관리실장	성명	안해정
	소속	경영관리본부	직위	경영관리본부장	성명	노재현

(전화번호 : 02-761-0717)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우리는 동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및 작성책임자로서 이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사업보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증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이 촌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김 명 진



작성책임자 안 해 정



작성책임자 노 재 현



Independent member
Morison Global

이촌회계법인

fy2021 사업보고서 대표이사 등의 서명

I. 회계법인의 개황

1.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21 기 2022년 03월 31일 현재

제 20 기 2021년 03월 31일 현재

제 19 기 2020년 03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제 19(전전) 기
자산			
유동자산	26,784,529,316	20,973,190,420	16,425,081,111
현금 (주석3)	-	-	-
보통예금 (주석4)	11,547,243,139	7,462,466,825	5,755,355,586
외상매출금 (주석4)	15,273,253,056	12,785,935,293	9,453,972,187
대손충당금	(689,934,060)	(771,190,177)	(414,624,954)
단기대여금 (주석4)	266,186,741	804,149,056	1,029,923,914
대손충당금	-	(302,471,598)	-
미수수익	-	-	62,081,308
미수금 (주석4)	187,753,574	419,665,296	429,743,139
대손충당금	-	-	-
선급금	51,363,031	490,503,707	68,236,952
선급비용	148,663,835	84,132,018	40,392,979
선급세금	-	-	-
비유동자산	3,201,508,044	3,010,413,573	2,421,076,890
투자자산	415,865,892	445,381,638	399,999,374
투자유가증권	1,000,000	1,000,000	-
손해배상공동기금 (주석7)	314,143,567	356,727,807	312,345,543
보험예치금	100,722,325	87,653,831	87,653,831
유형자산 (주석5)	1,885,082,858	1,102,320,875	704,322,776
차량운반구	2,002,456,907	1,637,317,815	1,347,070,815
감가상각누계액	(977,675,960)	(808,545,306)	(844,376,006)
비품	708,119,695	652,778,990	631,357,706
감가상각누계액	(393,155,084)	(411,396,814)	(504,298,835)
시설장치	1,154,836,572	572,719,520	639,849,522
감가상각누계액	(609,499,272)	(540,553,330)	(565,280,426)
무형자산	121,560,270	110,056,230	140,936,965
소프트웨어	21,858,797	31,966,155	37,908,049
기타무형자산	99,701,473	78,090,075	103,028,916
기타비유동자산	778,999,024	1,352,654,830	1,175,817,775
임차보증금	342,688,922	806,399,000	676,028,604
기타보증금	383,310,102	202,523,850	209,057,191
전신전화가입권	-	1,455,980	1,455,980
회원권	53,000,000	342,276,000	289,276,000

과 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제 19(전전) 기	
자 산 총 계		29,986,037,360		23,983,603,993		18,846,158,001
부 채						
유동부채		20,494,862,178		15,287,945,239		10,384,409,238
미지급금	309,238,566		485,827,454		1,329,514,707	
예수금	5,262,706,686		3,600,545,948		2,917,074,855	
부가세예수금	140,393,182		380,279,425		415,938,356	
선수금	2,439,988,119		1,983,929,786		1,398,956,621	
단기차입금	-		-		359,981,431	
미지급세금	1,851,444,623		920,301,007		22,493,039	
미지급비용	10,491,091,002		7,917,061,619		3,940,450,229	
비유동부채		215,108,763		55,108,763		-
장기예수금	215,108,763		55,108,763		-	
부 채 총 계		20,709,970,941		15,343,054,002		10,384,409,238
자 본						
자본금		504,925,000		504,925,000		1,000,000,000
자본금(주식8)	504,925,000		504,925,000		1,000,000,000	
이익잉여금		8,771,141,419		8,135,624,991		7,461,748,763
손해배상준비금(주식7)	5,852,946,007		5,852,946,007		5,852,946,007	
미처분이익잉여금	2,918,195,412		2,282,678,984		1,608,802,756	
자 본 총 계		9,276,066,419		8,640,549,991		8,461,748,763
부채 및 자본 총계		29,986,037,360		23,983,603,993		18,846,158,001

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21기 2021년 04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제20기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제19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제 19(전전) 기
영업수익	63,031,721,042	44,564,980,314	39,617,676,435
회계감사·검토영업수익	18,311,724,546	16,496,283,391	11,612,535,419
세무자문영업수익	11,392,671,254	6,697,946,748	8,340,020,932
경영자문영업수익	26,670,167,777	16,636,502,953	14,952,941,146
기장대리영업수익	6,657,157,465	4,734,247,222	4,712,178,938
영업비용	61,816,173,187	44,127,337,853	39,978,210,867
급여	24,227,870,361	17,986,611,874	15,197,675,255
상여금	12,498,368,148	7,692,516,243	4,508,279,834
제수당	-	-	45,237,180
잡급	30,753,243	14,058,641	7,430,880
퇴직급여	3,964,612,223	3,535,973,555	5,400,822,840
복리후생비	3,731,019,195	2,142,107,784	2,411,907,859
여비교통비	723,184,938	544,419,930	722,179,138
접대비	2,117,525,301	1,297,840,994	1,159,033,213
통신비	176,549,559	144,884,376	215,201,034
전력비	7,989,200	14,508,497	10,127,614
수도광열비	-	-	46,715,353
세금과공과	620,239,877	654,310,909	553,251,334
지급임차료	1,647,960,956	970,843,895	821,126,037
감가상각비	932,434,777	370,240,370	278,513,058
수선비	61,536,472	52,669,004	95,750,610
보험료	458,305,031	579,438,290	520,544,290
차량유지비	320,310,780	178,943,630	240,217,053
운반비	19,319,951	14,389,058	69,402,296
교육훈련비	27,281,758	21,339,760	44,472,974
도서인쇄비	202,883,259	139,239,020	305,614,938
회의비	26,033,016	15,196,722	34,537,286
사무용품비	99,664,220	31,244,196	174,753,408
소모품비	487,855,605	241,425,408	468,599,930
지급수수료	8,048,460,931	3,886,640,776	2,906,164,831
보관료	10,738,742	9,475,962	16,851,297
광고선전비	9,333,400	5,794,545	43,414,914
건물관리비	818,762,925	408,954,674	293,760,705
대손상각비	185,238,746	1,359,951,898	522,243,779
무형고정자산상각	46,035,960	34,517,099	34,681,388
잡비	-	274,028	51,526,325
협회비	315,904,613	76,275,546	149,640,894
외주용역비	-	1,703,251,169	2,628,533,320
영업손익	1,215,547,855	437,642,461	(360,534,432)
영업외수익	259,787,236	1,459,380,643	130,141,464

과 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제 19(전전) 기	
이자수익	27,640,235		26,564,186		46,964,585	
외환차익	18,987,953		4,957,628		9,984,282	
국고보조금	91,989,980		49,038,000		59,774,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5,953,065		14,272,397		13,418,597	
잡이익	105,216,003		1,364,548,432		-	
영업외비용		535,030,973		509,705,911		308,090,662
유형자산처분손실	30,415,824		5,109,155		62,131,676	
이자비용	10,673,129		7,292,419		-	
기부금	34,740,000		12,940,000		27,920,000	
외환차손	5,947,519		13,964,531		1,417,069	
기타의대손상각비	-		302,471,598		-	
기타자산손상차손	289,276,000		-		-	
잡손실	163,978,501		167,928,208		216,621,917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940,304,118		1,387,317,193		(538,483,630)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304,787,690		713,440,965		537,021,210
법인세비용	304,787,690		713,440,965		537,021,210	
당기순손익		635,516,428		673,876,228		(1,075,504,840)

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1 기 2021년 04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제 20 기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제 19 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제 19(전전) 기
I.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322,589,564	2,960,342,291	800,264,551
당기순손익	635,516,428	673,876,228	(1,075,504,840)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1,483,401,307	2,081,638,891	921,037,875
감가상각비	932,434,777	370,240,370	278,513,058
대손상각비	185,238,746	1,369,300,669	545,711,753
기타의대손상각비	-	302,471,598	-
무형자산상각비	46,035,960	34,517,099	34,681,388
유형자산처분손실	30,415,824	5,109,155	62,131,676
기타자산손상차손	289,276,000	-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15,953,065)	(328,493,836)	(185,424,785)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	-	-	148,538,214
대손충당금환입	-	9,348,771	23,467,974
유형자산처분이익	15,953,065	14,272,397	13,418,597
잡이익	-	304,872,668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3,219,624,894	533,321,008	1,140,156,301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753,812,626)	(4,336,349,781)	(1,273,644,951)
미수금의 감소(증가)	231,911,722	10,077,843	437,427,768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62,081,308	18,234,055
선급금의 감소(증가)	439,140,676	(422,266,755)	(52,300,975)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64,531,817)	(43,739,039)	(5,104,423)
선납세금의 감소(증가)	-	-	254,628,264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1,153,888)	(843,687,253)	(1,749,899,514)
예수금의 증가(감소)	1,676,725,738	683,471,093	2,232,312,142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239,886,243)	(35,658,931)	(283,402,661)
선수금의 증가(감소)	456,058,333	584,973,165	129,719,074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3,505,172,999	4,874,419,358	1,511,516,444
퇴직금의 지급	-	-	(79,328,922)
II.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37,813,250)	(758,156,052)	1,209,511,97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07,249,667	540,131,382	1,753,462,675
단기대여금의 회수	235,490,717	236,251,551	672,339,222
시설장치의 처분	-	15,943,891	34,721,279
차량운반구의 처분	27,529,414	62,352,091	20,759,516
비품의 처분	-	6,691,554	59,151,858
임차보증금의 감소	576,446,000	93,769,604	808,535,000
기타보증금의 감소	25,199,296	72,122,691	157,955,800
회원권의 처분	-	53,000,000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납입	42,584,24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145,062,917)	(1,298,287,434)	(543,950,705)
단기대여금의 증가	-	10,476,693	69,962,504

과 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제 19(전전) 기
보험예치금의 증가	13,068,494	-	13,772,868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납입	-	44,382,264	12,145,548
차량운반구의 취득	582,829,168	677,363,280	253,446,825
비품의 취득	284,869,765	166,699,483	41,772,414
시설장치의 취득	889,490,0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112,735,922	224,140,000	29,500,000
기타보증금의 증가	204,529,568	65,589,350	118,642,750
회원권의 취득	-	106,000,000	-
무형자산의 취득	57,540,000	3,636,364	4,707,796
III.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495,075,000)	(569,115,14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4,930,000	209,647,383
단기차입금의 차입			209,647,383
유상증자		84,93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80,005,000)	(778,762,532)
단기차입금의 상환		-	728,762,532
유상감자		580,005,000	50,000,000
현금의 증가(감소)(I +II+III)	4,084,776,314	1,707,111,239	1,440,661,372
기초의 현금	7,462,466,825	5,755,355,586	4,314,694,214
기말의 현금	11,547,243,139	7,462,466,825	5,755,355,586

라.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1 기 2021년 04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제 20 기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제 19 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9.04.01 (전전기초) 보고금액	1,050,000,000	-	-	-	8,537,253,603	9,587,253,603
유상감자	(50,000,000)	-	-	-	-	(50,000,000)
당기순손실	-	-	-	-	(1,075,504,840)	(1,075,504,840)
2020.03.31 (전전기말)	1,000,000,000	-	-	-	7,461,748,763	8,461,748,763
2020.04.01 (전기초) 보고금액	1,000,000,000	-	-	-	7,461,748,763	8,461,748,763
유상증자	84,930,000	-	-	-	-	84,930,000
유상감자	(580,005,000)	-	-	-	-	(580,005,000)
당기순이익	-	-	-	-	673,876,228	673,876,228
2020.03.31 (전기말)	504,925,000	-	-	-	8,135,624,991	8,640,549,991
2021.04.01 (당기초) 보고금액	504,925,000	-	-	-	8,135,624,991	8,640,549,991
당기순이익	-	-	-	-	635,516,428	635,516,428
2022.03.31 (당기말)	504,925,000	-	-	-	8,771,141,419	9,276,066,419

마. 주식

제 21 기 2022년 03월 31일 현재

제 20 기 2021년 03월 31일 현재

제 19 기 2020년 03월 31일 현재

이촌회계법인

1. 일반사항

이촌회계법인(이하 "당 회계법인")은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당 회계법인의 본사와 주요사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6-18층

(2) 주요사업 내용 : 회계감사, 세무 및 경영자문 업무 등

(3) 대표이사 : 김명진

(4) 주요 출자자 및 지분율 :

(단위 : 좌, %)			
주요 출자자	출자좌수	지분율	비고
김명진	6,978	6.91	대표이사
그외 41 명	94,007	93.09	사원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당 회계법인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당 회계법인의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 회계법인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당 회계법인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취득목적과 보유의도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장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그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 회계법인은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합니다.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

로 인식하되,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합니다.

(3) 대손충당금

당 회계법인은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고,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방법 등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과 매입할인 등을 취득원가에 가감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등에 의해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고, 자산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

니다.

과 목	내용연수
시설장치	5
차량운반구	5
집기비품	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표시방법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등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 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상각방법 등

1)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무형자산을 개별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구성되며, 매입할인 등을 차감하여 취득 원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하지 않은 취득한 무형자산의 가치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에 귀속되는 가치는 영업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보조 등에 의해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고, 자산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상각방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상각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 목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

최근 보고기간 이후 무형자산의 사용방법, 기술적 진보 그리고 시장가격의 변동과 같은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내용연수 등에 대한 중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의 기대와 달라진 경우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표시방법

상각액과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직접 차감하여 기재하고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6)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

1) 손해배상공동기금

당 회계법인은 회사 또는 감사보고서를 이용한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항목	적립금액
기본적립금	- 소속공인회계사수 100명 미만 : 50,000 - 소속 공인회계사수 100명 이상 : 250,000
연간적립금	- 해당 사업연도 회계감사(법정감사) 보수총액의 100분의 4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제4항단서규정 및 제7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편,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의 누계액 및 그 운용수입금의 합계의 한도는 직전 2개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 평균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준비금

당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 충당부채

당 회계법인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우발부채

당 회계법인은 다음의 경우를 우발부채로 보아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 ①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인 경우
- ②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우발자산

당 회계법인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우발자산으로 보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8) 수익인식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진행률은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퇴직급여

당 회계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직원에 대하여 연금의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확정된 부담금을 납부하며, 당해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자산의 손상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유형자산은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기타자산은 동 미달액을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치로 조정하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가치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치가 차기 이후에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손상되기 전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1)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및 재조정

장기 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 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와 회생절차개시,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 등으로 채권·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기간이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장부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장부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한 법인세부담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3) 환율변동효과

1)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

당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

당 회계법인은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였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하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은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15) 추정의 사용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의 경영자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및 충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매출채권, 유형자산 및 충당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예금종별	예치은행	당 기	전 기	전 전 기
현금	-	-	-	-
보통예금 등	우리은행 등	11,547,243	7,462,467	5,755,356
합계		11,547,243	7,462,467	5,755,356

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가. 당기말,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유동 :			
매출채권	15,273,253	12,785,935	9,453,972
대손충당금	(689,934)	(771,190)	(414,625)
단기대여금	266,187	804,149	1,029,924
대손충당금	-	(302,472)	-
미수금	187,754	419,665	
소계	15,037,260	12,936,087	10,499,014
비유동 :			
임차보증금	342,689	806,399	676,029
소계	342,689	806,399	676,029
합계	15,379,949	13,742,486	11,175,043

나.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073,662	414,625
설정액	492,514	921,112
제각	(876,242)	(262,075)
기말금액	689,934	1,073,662

5. 유형자산

가.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원)				
구분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시설장치	합계
2021.04.01	828,773	241,382	32,166	1,102,321

(단위: 천원)				
구 분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시설장치	합 계
취득	582,829	284,870	889,490	1,757,085
처분	(24,819)	(16,508)	(664)	(41,991)
감가상각	(362,002)	(194,779)	(375,654)	(932,435)
2022.03.31	1,024,781	314,965	545,337	1,885,083
취득원가	2,002,457	708,120	1,154,836	3,865,413
상각누계액	977,676	393,155	609,499	1,980,330

(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시설장치	합 계
2020.04.01	502,695	127,059	74,569	704,323
취득	677,363	166,699	-	844,062
처분	(51,200)	(8,574)	(16,050)	(75,824)
감가상각	(300,085)	(43,802)	(26,353)	(370,240)
2021.03.31	828,773	241,382	32,166	1,102,321
취득원가	1,637,318	652,779	572,719	2,862,816
상각누계액	808,545	411,397	540,553	1,760,495

6. 무형자산

가.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의무형자산	합 계
2021.04.01	-	31,966	78,090	110,056
취득	-	-	57,540	57,540
처분	-	-	-	-
감가상각	-	(10,107)	(35,929)	(46,036)

(단위 : 천원)				
구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의무형자산	합계
2022.03.31	-	21,859	99,701	121,560

(2)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기타의무형자산	합계
2020.04.01	-	37,908	103,029	140,937
취득	-	3,636	-	3,636
처분	-	-	-	-
감가상각	-	(9,578)	(24,939)	(34,517)
2021.03.31	-	31,966	78,090	110,056

7.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

가.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기중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356,728	312,346
적립액	15,687	44,382
감소액	58,271	-
기말	314,144	356,728

나. 손해배상준비금의 기중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5,852,946	5,852,946
적립액	-	-
감소액	-	-
기말	5,852,946	5,852,946

8. 자본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원, 주).

구분	보통주	
	당기	전기
1주당 금액	5,000	5,000
발행 주식 총수	100,985주	100,985주
자본금	504,925,000	504,925,000

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21기 2021년 04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22년 06월 23일
제20기 2020년 04월 0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21년 06월 24일
제19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20년 06월 25일

(단위 : 원)

과목	제 21(당) 기		제 20(전) 기		제 19(전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2,918,195,412		2,282,678,984		1,608,802,756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282,678,984		1,608,802,756		2,684,307,596	
당기순손익	635,516,428		673,876,228		(1,075,504,840)	
II. 이익잉여금처분액		1,260,634,421		-		-
손해배상준비금	1,260,634,421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657,560,991		2,282,678,984		1,608,802,756

10.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36,726,239	25,679,128
퇴직급여	3,964,612	3,535,974
감가상각비	932,435	370,240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복리후생비	3,731,019	2,142,108
세금과공과	620,240	654,311
지급임차료	1,647,961	970,844

11.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의 포괄손익과 당기순손익은 동일합니다.

12.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 회계법인과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은 총 8건입니다. 이 중에서 당 회계법인이 피고인 소송은 5건이며, 주요 소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단위: 천원)				
원고	피고	금액	진행경과	사건내용
에스에프씨 주주	이촌회계법인	250,000	1심 진행중	손해배상
에스에프씨 주주	이촌회계법인	1,115,798	1심 진행중	손해배상
에스에프씨 주주	이촌회계법인	2,868,980	1심 진행중	손해배상
에스에프씨 주주	이촌회계법인	735,766	1심 진행중	손해배상
에스에프씨	이촌회계법인	201,000	1심 진행중	손해배상
이촌회계법인외 1	증권선물위원회	50,000	1심 진행중	행정소송
이촌회계법인외 1	증권선물위원회	130,000	1심 진행중	행정소송
이촌회계법인외 1	금융위원회	50,000	2심 진행중	행정소송

당 회계법인은 상기 소송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3. 현금흐름표

당기 중 투자 및 재무활동과 관련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14. 특수관계자 거래

가. 당 회계법인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에이앤티, (주)림스텍, (주)에스비벤처스	(주)에이앤티, (주)림스텍, (주)에스비벤처스

나. 당기 및 전기 중 당 회계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거래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매출거래 등		매입거래 등	
	당기	전기	당기	전기
(주)에이앤티	-	-	1,502,895	743,480
(주)림스텍	7,000	6,500	-	-
(주)에스비벤처스	1,700	1,700	6,225	39,378

(2) 채권 · 채무 잔액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주)에이앤티	-	466,092	-	474,925
(주)림스텍	-	-	1,100	-
(주)에스비벤처스	550	-	550	3,485

다. 당기 및 전기 중 당 회계법인의 주.임.종 채권채무 변동내역 및 잔액은 다음과 같

습니다.

(1) 주.임.종 채권·채무의 변동 내역

①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대여	회수	차입	상환
사원	-	537,962	-	-

(주1) 단기대여금 당기 회수액 중 302,472천원은 대손충당금과 상계되었습니다.

②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대여	회수	차입	상환
사원	10,477	236,252	-	(359,981)

(2) 주.임.종 채권·채무 잔액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단기대여금	사원	266,187	804,149

라.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담보는 없습니다.

15. 재무제표의 확정 및 승인

당 회계법인의 재무제표는 2022년 6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고 2022년 6월 23일 정기사원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 부속명세서

가. 차입금 명세서

(단위 : 원, %)

차입처	차입금액	계정과목	만기일	차입금리
해당사항없음	-	-	-	-

나. 타법인 출자 현황

(단위 : 원, 주, %)

계정과목	투자회사명	기초잔액			증감내역		기말잔액			비고
		수량	지분율	취득 원가	수량	취득 (처분) 가액	수량	지분율	취득 원가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합계		-	-	-	-	-	-	-	-	-

다.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천원)

보증일	채무자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채무자와의 관계
-	해당사항없음	-	-	-	-

3. 사업부문별 매출액

(단위 : 원, %)

구분		2021(당기)		2020(전기)		2019(전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회계감사	법정감사 (외감법)	14,182,970,932	22.50	14,221,171,453	31.91	8,937,185,765	22.56
	법정감사 (외감법이외)	625,128,255	0.99	369,806,410	0.83	404,921,094	1.02
	임의감사	3,503,625,359	5.56	1,905,305,528	4.28	2,270,428,560	5.73
	소계	18,311,724,546	29.05	16,496,283,391	37.02	11,612,535,419	29.31
세무자문	세무조정	7,846,510,062	12.45	5,208,022,097	11.69	7,321,685,613	18.48
	회계기장	6,657,157,465	10.56	4,734,247,222	10.62	4,712,178,938	11.89
	기타세무	3,546,161,192	5.63	1,489,924,651	3.34	1,018,335,319	2.57
	소계	18,049,828,719	28.64	11,432,193,970	25.65	13,052,199,870	32.95
경영자문	감사대상회사	191,120,400	0.30	416,800,000	0.94	386,455,637	0.98
	기타	26,479,047,377	42.01	16,219,702,953	36.40	14,566,485,509	36.77

구분		2021(당기)		2020(전기)		2019(전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소계	26,670,167,777	42.31	16,636,502,953	37.33	14,952,941,146	37.74
기타	감사대상회사	-	-	-	-	-	-
	기타	-	-	-	-	-	-
	소계	-	-	-	-	-	-
합계		63,031,721,042	100	44,564,980,314	100	39,617,676,435	100

4. 목적

- 회계감사 업무
-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정리에 관한 업무
- 원가계산업무
- 법인설립·청산에 관한 회계 및 내부통제구조에 관한 입안업무
-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 경영자문·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업무
- 기업매수 및 합병에 관한 업무
- 경영·경제정보의 조사수집 및 분석업무
- 전산과 정보서비스 용역에 관한 업무
- 보험 사무에 관한 업무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 업무
- 일반기업 및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업무
- 기업내부통제구조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인증 및 자문업무
- 상기 각 호 업무에 부대되는 교육 및 출판업무
- 기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에 부대되는 업무

5. 연혁

가. 설립경과 및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1) 회사의 설립일 : 2001년 11월 23일 법인설립

(2) 주사무소 소재지 및 그 변경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동, 포스트타워) 16-18층
(2021년 4월 19일 현재 주사무소로 소재지 변경)

(3) 분사무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 2002년 4월 12일 대전 분사무소 설치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133)
- 2002년 6월 1일 강남 분사무소 설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0-22 유성빌딩 12층)
- 2002년 9월 16일 대구 분사무소 설치
(대구시 서구 평리4동 1371-8 대구경총회관 6층)
- 2002년 11월 4일 강남 분사무소 이전 변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9 강남부속상가 12-302)
- 2005년 10월 27일 강남 분사무소 이전 변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9 수산빌딩 3층)
- 2006년 1월 24일 창원 분사무소 설치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3-40)
- 2007년 06월 01일 경남 분사무소 명칭 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73-40)
- 2006년 7월 21일 부산 분사무소 설치
(부산시 금정구 부곡2동 294-1 금정프라자 4층)
- 2007년 06월 01일 호남 분사무소 설치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860-1)
- 2009년 07월 15일 대구 분사무소 이전 변경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320-2)
- 2010년 11월 15일 부울 분사무소 설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42-27 경동빌딩 15층)
- 2012년 03월 30일 강남 분사무소 이전 변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2(대치동))
- 2013년 04월 01일 강남 분사무소 폐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2(대치동))

- 2018년 09월 17일 경남 분사무소 폐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49 (용호동))

- 2018년 06월 26일 부산분사무소 이전 변경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우동))

- 2019년 06월 30일 대구 분사무소 폐쇄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910호(신당동, 이엔씨비즈타워))

- 2019년 06월 30일 호남 분사무소 폐쇄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95(상동))

- 2019년 06월 30일 부울 분사무소 폐쇄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64번길 9(연산동))

- 기말현재 소속공인회계사 197명(공인회계사법상 수습7명 제외)으로 사업 영위 중

(4)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2001년 설립 시 초대 대표이사 신동진 취임

- 2004년 6월 대표이사 이종국 취임

- 2008년 6월 대표이사 신해수 취임

- 2012년 6월 대표이사 이한선 취임

- 2016년 6월 대표이사 정석용 취임

- 2020년 6월 대표이사 김명진 취임

(5)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설립 이후 중요한 변동 상황 : 해당사항 없음

(7)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일자 및 번호 : 2019.10.02 / 133호

나. 상호의 변경

- 2011년 8월 '회계법인이촌'에서 '이촌회계법인'으로 변경

다. 합병, 영업양수 또는 영업양도

- 해당사항 없음

6.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원)

일자	변경전 자본금	증자(감자)금액	변경후 자본금	변동원인
2005.05.27	550,000,000	50,000,000	600,000,000	유상증자
2005.08.05	600,000,000	50,000,000	650,000,000	유상증자
2006.01.24	650,000,000	50,000,000	700,000,000	유상증자
2006.08.07	700,000,000	50,000,000	750,000,000	유상증자
2007.06.01	750,000,000	50,000,000	800,000,000	유상증자
2007.09.12	800,000,000	50,000,000	850,000,000	유상증자
2009.03.16	850,000,000	50,000,000	900,000,000	유상증자
2009.04.30	900,000,000	50,000,000	950,000,000	유상증자
2010.11.09	950,000,000	50,000,000	1,000,000,000	유상증자
2014.05.24	1,000,000,000	50,000,000	1,050,000,000	유상증자
2020.01.21	1,050,000,000	-50,000,000	1,000,000,000	유상감자
2020.07.09	1,000,000,000	84,930,000	1,084,930,000	유상증자
2020.08.11	1,084,930,000	-580,005,000	504,925,000	유상감자

7.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내용
제휴일자	2011년 01월 01일
회사명	Morison Global

구분		내용
제휴회사 개황	국적	영국
	소재지	6th Floor, 2 Kingdom Street, Paddington, London W2 6BD, United Kingdom
	주요 업무	Assurance Services, Advisory Services, Tax Services
	회원사 분포국가수	74
	소속 전문가수	11,978
제휴형태		Memberfirm
제휴내용		감사 등 품질관리, 임직원교육, 인적자원 및 정보공유

8.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현황

사무소	소재 도시명	주소	우편번호	대표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사무소	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포스트타워)16-18층	07328	(02) 761-0717	www.e-chon.co.kr
분사무소	대전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51 대전상공회의소 7층	35235	(042)472-2124	www.e-chon.co.kr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우동) 에이스하이테크21빌딩 10층	48059	(051)715-0100	www.e-chon.co.kr

9.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및 관련 감사업무 현황

가.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현황

국가명	회계감독기구명	등록일자	최근 수감기간	비고
미국	PCAOB	2014.11.20	-	-

나. 외국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현황

국가명	증권시장명	피감사회사명	결산연월	발행증권	비고
해당사항없음	-	-	-	-	-

II. 주요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무개황

당 회계법인은 2001년에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회계감사, 재무자문 및 컨설팅, 세무 컨설팅 및 기장대리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외 기업 합병 등에 대한 자문, 상장컨설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 분류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udit & Assurance

법정감사, 내부통제 구축 및 평가, 적발 감사,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특별법에 의한 감사, 로열티 감사, 외국 회계기준에 따른 감사, 특수 목적 감사, 공공부문 및 비영리법인 감사, 기업진단업무, 사업비 정산 업무(국고보조금 외부감사 서비스), Risk Assurance Service, 위험관리와 Compliance 등

2) Advisory

기업금융 자문, 가치 평가, 구조조정 자문,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지원, 부실채권 매각 및 인수 서비스, 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 자문 등

3) 세무서비스

세무자문 서비스, 세무조사 및 조세 불복 서비스, Outsourcing 서비스, 세무회계정보 서비스, 예규 질의 서비스 등

4) 기타

재무예측 및 사업 계획 수립, 원가 및 관리회계 컨설팅, 연구비 정산 용역 등, 벤처기업 관련 창업 지원, 재무제표 및 주식 작성 지원 등

나. 당해 사업연도 중 특기할만한 실적

- 특기사항 없음.

2. 외감법에 의한 감사실적

가. 감사실적 총괄표

(단위 : 사)

구분		감사대상회사	당 기	전 기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	9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59	64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3	6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6	3
	기타 법인	291	258	
		합계	366	340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	8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40	41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1	2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4	2
	기타 법인	30	26	
		합계	82	79

나. 개별(별도)재무제표 감사실적

(1) 자산규모별 현황

(단위 : 사)

구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기타법인	합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조원 이상	1	-	-	-	-	1
1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	-	-	-	-	-
8,000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1	-	-	-	-	1
5,000억원 이상 ~ 8,000억원 미만	1	-	-	1	4	6
3,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4	1	-	-	9	14
1,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	20	-	1	21	4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23	-	1	46	70
12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8	3	2	164	177
120억원 미만	-	7	-	1	47	55
합계	7	59	3	6	291	366

(2) 연속감사 현황

(단위 : 사)

구분		1년차 (신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상	합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6	1	-	-	-	-	7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3	17	7	8	2	-	12	59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1	-	1	-	-	1	-	3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3	3	-	-	-	-	-	6
기타 법인		76	68	36	32	15	12	52	291
합계		93	94	45	40	17	13	64	366

(3) 감사의견 현황

(단위 : 사)

구분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	-	-	-	7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58	-	-	1	59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3	-	-	-	3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4	-	-	2	6
기타 법인		270	6	-	15	291
합계		342	6	-	18	366

다.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적

연번	지배회사명	종속회사수	감사의견
1	퀀텀헬스케어코리아	1	한정
2	효성오앤비	2	적정
3	코람코가치부가형리테일제1호위탁관리모 부동산투자회사	3	적정
4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	2	적정
5	에이피컴퍼니	5	적정
6	필옵틱스	5	적정
7	티에스에너지25호	1	적정
8	삼성포리머	1	적정
9	메디씨이	4	적정
10	덴티스	6	적정
11	영풍	14	적정

연번	지배회사명	종속회사수	감사의견
12	휴림	1	적정
13	영신금속공업	1	적정
14	멜콘	3	적정
15	지어소프트	2	적정
16	래몽래인	3	적정
17	대성산업	15	적정
18	모두투어네트워크	9	적정
19	원익피앤이	9	적정
20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10	적정
21	본느	6	적정
22	쌌믹스	4	적정
23	자이언트스텝	4	적정
24	케이엠	5	적정
25	상신이디피	4	적정
26	지란지교소프트	3	적정
27	본아이에프	2	적정
28	코맥스카본	1	적정
29	넥셀	2	적정
30	인터로조	2	적정
31	KH필룩스	18	적정
32	머스트홀딩스	6	적정
33	미래생명자원	3	적정
34	삼영무역	9	적정
35	아벤트리알앤엠	1	적정
36	시그네틱스	1	적정
37	귀뚜라미에너지	1	적정
38	휴비츠	2	적정
39	케이엔더블유	8	적정

연번	지배회사명	종속회사수	감사의견
40	시티코어	1	적정
41	파나시아	3	적정
42	캠옵틱스	1	적정
43	피플라이프	1	적정
44	이엘피	2	적정
45	그리드위즈	2	적정
46	코리아써킷	4	적정
47	인터플렉스	1	적정
48	위드텍	2	적정
49	미코바이오메드	3	적정
50	제이시스메디칼	2	적정
51	울촌	1	적정
52	진셀팜	2	적정
53	노바텍	4	적정
54	한송네오텍	2	의견거절
55	미스터블루	4	적정
56	엠에프엠코리아	7	적정
57	이원다이애그노믹스	8	적정
58	기가레인	4	적정
59	이지스자산운용	10	적정
60	메가존	4	적정
61	게임빌컴투스플랫폼	1	적정
62	제주맥주	2	적정
63	세나테크놀로지	5	적정
64	에이플러스라이프	1	적정
65	신한	4	의견거절
66	라파스	5	적정
67	케이엔제이	1	적정

연번	지배회사명	종속회사수	감사의견
68	스탠더스	1	적정
69	덕양산업	4	적정
70	대림비엔코	2	적정
71	알테오젠	4	적정
72	에스에너지	26	적정
73	장업시스템	1	적정
74	뉴젠솔루션	2	적정
75	디지털조선	4	적정
76	에이스토리	1	적정
77	세코닉스	5	적정
78	트웜	3	적정
79	쓰리디팩토리	2	의견거절
80	대전복합터미널	1	적정
81	협성건설	1	적정
82	이엠코리아	1	적정

3. 국내자본시장 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감사현황

구분	피감사회사명	결산월	국적	연결대상 회사수
코스닥시장상장법인	SBI FinTech Solutions	3월	일본	10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컬러레이홀딩스	12월	홍콩	5

Ⅲ.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쉽 책임

가. 품질관리기준 구축·운영 현황

당 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회계법인 구성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1) 품질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당 법인의 품질관리제도 구축과 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전체 조직과 구성원은 감사 및 검토와 기타 인증 및 관련 서비스 계약 수행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담당이사가 발행하는 인증보고서가 해당 상황에 적합하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품질관리 조직의 운영

당 법인은 업무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실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위원회는 대표이사(위원장), 품질관리실장 및 품질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개최시 대표이사(위원장), 품질관리실장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 참석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감사보고서 발행 전·후 심리,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등 업무 품질과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품질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실은 품질관리실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품질관리 담당이사"와 경력 기간 5년 이상의 "품질관리심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설명한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등 품질관리실의 고유 업무와 더불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별된 이슈의 해결을 위한 업무 지원, 필요한 정책과 절차의 개발 및 시행, 분야별 전문가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 및 비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며 사원총회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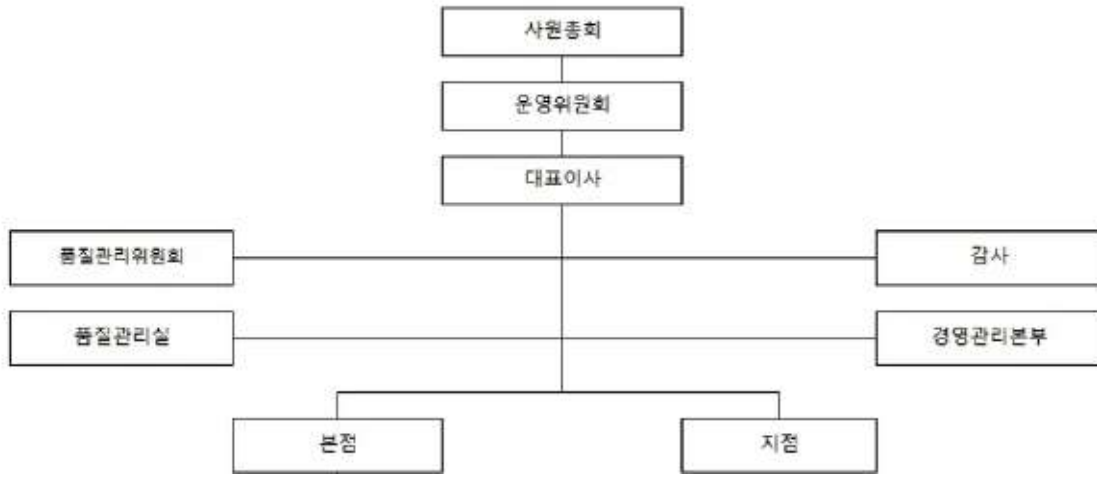
나. 회계법인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현황

당 법인은 최상위 의결기구로 사원총회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 운영위원, 감사를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합니다(해임도 동일). 품질관리담당조직인 품질관리실은 모두 8명(등기이사 1인, 직원3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구	역할	의결사항	권한	책임	구성원의 자격 요건	의사결정방법	선임절차	해임사유 및 해임절차
사원총회	법인운영에 관한 정책과 방침을 결 정	정관, 운영규정, 예산 및 결산승인 , 법인의 합병, 분 할, 해산 및 청산 에 관한 사항, 사 원의 가입과 탈퇴 , 대표이사, 경영 관리본부장, 이사 의 선임과 해임 등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	주요정책과 방침 을 결정하는 주체 로서 품질관리제 도에 대한 궁극적 인 책임	사원	일반결의 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 수의 찬성 특별결의 총사원의 반수 이 상이 출석하고 총 사원 의결권의 4 분의 3이상을 가 지는 사원의 찬성	사원2인 이상의 추천 경영관리본부장 추천운영위원회 에 제출 운영위원회의 요 청으로 사원총회 의 특별결의	해임사유 1. 사직서 제출 2. 법인의 운영규 정에 따른 해임사 유에 해당 해임절차 1. 사원이 사직서 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퇴직3개월 전에 예고 2. 사원총회의 특 별결의
운영위원회	집행임원의 업무 를 감독하고, 법 인의 운영과 관련 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정관 및 내규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인의 운영에 관 련된 사항	집행임원의 업무 를 감독하고, 법 인의 운영과 관련 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법령, 정관 및 운 영규정에 따라 법 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책임	대표이사, 경영관 리본부장, 법인의 사업본부부장 중 5인	일반결의 운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의 동의 특별결의 운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2/3 이 상의 동의	운영위원회의 위 원은 대표이사, 경영관리본부장, 법인의 사업부 본 부장 중 등기이사 5인으로 구성하 며, 5명을 본부장 간의 호선으로 선 출	사임
품질관리위원회	법인의 감사품질 과 관련하여 중요 한 항목의 논의, 검토 및 결정	법인의 감사품질 과 관련한 중요한 항목	법인의 감사품질 과 관련하여 중요 한 항목의 논의, 검토 및 결정에 관련 권한	법인의 감사품질 과 관련하여 중요 한 항목의 논의, 검토 및 결정에 대한 책임	대표이사 및 품질 관리실의 추천 운영위원회 승인	5인 이상이 참석 하고 그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	대표이사 및 품질 관리실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에서 위촉	직무를 수행하기 관련하다고 판단 되는 때 운영위원 회에서 해촉
감사	법인의 경영활동 의 점검	-	위법부당한 사실 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청권한	예산의 적절한 집 행여부와 법인결 산의 적정성, 법 인 재무제표의 적 정성, 법인의 윤 리준법신고센터 에 접수된 제보사 항 등을 감사할 책임	사원	-	사원총회의 일반 결의에 의하여 사 원 중 1인을 선임	법령이나 정관 등 의 내규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등 이 있는 경우 사 원총회의 특별결 의에 의해 해임

<서식1-1>

조직도



조직도

<서식1-2>

회계법인 내부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목적	구성인력 수	비고
-	-	-	-

<서식1-3>

회계법인 계열회사 현황

회사명	설립일	사업내용	대표이사	주주현황(지분율)	소재지
(주)에이앤티	2008.10.02	소프트웨어개발	구정현	임현수(66.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대오빌딩 1003(여의도동)

다. 품질관리조직의 구성내역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의 현황

<서식2>

품질관리조직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현황

부서명	주요업무	인력 수	전문성 등			
			경력기간	구분	상근	전담
품질관리실	품질관리 총괄	1	7년 이상	공인회계사 (이사)	상근	전담
품질관리실	감사품질관리, 품질관리제도 관련 규정 수립, 운영 및 모니터링, 관련 자문 및 교육	4	7년 이상	공인회계사	상근	전담
품질관리실	감사품질관리(I T감사, 내부회 계관리제도 감사 등), 자문 및 교육	1	5년 미만	기타직원	상근	비전담
품질관리실	감사계약, 보고서 공시, 관련 자문 및 모니터링, 감사조서 관리	1	5년 미만	기타직원	상근	전담
품질관리실	감사계약, 보고서 공시, 관련 자문 및 모니터링, 감사조서 관리	1	5년 미만	기타직원	상근	전담

라. 품질관리 관련 예산(인건비)의 비중

<서식3>

품질관리 관련 예산(인건비) 비중

(단위 : 백만원, %)

법인 전체 인건비	품질관리 관련 인건비	비중
40,691	933	2.29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가. 품질관리기준 구축·운영 현황

(1) 윤리적 요구사항(성실, 객관성,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비밀유지, 전문가적 품위)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의 구축·운영 현황

당 법인의 모든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외부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윤리 사항 및 독립성의 준수에 관한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윤리규정, 윤리행동규칙, 윤리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이 정하는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그 이행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역할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윤리사무책임자를 두고 품질관리실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독립성 훼손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의 구축·운영 현황

1) 재무적 이해관계 및 사업관계

① 주식관리시스템 운영

공인회계사법상 본인과 배우자는 본인이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며, 소속 공인회계사 본인과 배우자는 당 법인의 모든 감사고객회사에 대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식보유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독립성검토시스템(ERP_iU_독립성유지확인서 징구, 주식거래금지 준수확인서 징구, 주식 및 채권채무 등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거래이외의 재무적이해관계 등에 대하여는 재무적이해관계확인서를 사원으로부터 징구하여 독립성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의 재무적 이해관계 점검

매년 파트너를 포함한 전문직원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개인의 재무적 이해관계(주식투자, 예·적금, 대출 등)를 포함한 독립성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고용관계 등 기타 인적관계

① 고용관계 등록 검토시스템 운영

당 법인은 독립성검토시스템(ERP_iU_고용관계 등록)을 통해 감사고객과의 고용관계 등 기타 인적관계에 대해 독립성 훼손위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② 독립성유지확인서

모든 전문직임직원에 대해 연 1회 독립성 및 윤리적 요구사항에 대한 법인의 정책과 절차 및 재무적 이해관계를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이 때 감사하는 고객 및 그 독립성 준수대상 관계회사에 고용주, 임원 또는 재무 담당 책임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재직한 적이 없음을 확인받습니다.

3) 비감사업무 수행 등

고객에게 비감사업무 제공 시 업무수행팀에서는 그룹웨어 및 ERP_iU시스템을 통해 해당회사가 당 법인의 감사고객 및 기타 독립성 준수대상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사고객 및 기타 독립성 준수대상 회사에 비감사업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수행팀은 감사수행팀 및 품질관리실과 수행업무 내역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비감사업무의 제공이 독립성 훼손위험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이러한 위험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외에는 해당 위험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합니다.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비감사업무의 수임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허용된 비감사업무 수행시에는 고객의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와 사전 동의 또는 협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3) 유착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의 구축·운영 현황

당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사담당이사 교체 규정(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경우 3년, 그외 비상장법인은 5년)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이사는 매년 감사수행연수를 파악하여 감사담당이사의 교체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동 내용은 감사조서의 일부로 문서화됩니다.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가. 품질관리기준 구축·운영 현황

(1)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1)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 관련

담당이사는 고객회사 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법인 차원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 포함)를 평가하고, 해당 업무를 수임하거나 유지할 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능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법인과 업무수행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의 수임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실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실장은 담당이사가 제출하는 감사업무사전수임보고 및 위험평가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승인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용 및 유지 결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의 성실성을 고려

감사대상회사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주주와 경영진, 특수관계자, 내부감시기구의 구성과 사업적 평판
-	회사의 업무관행 등 사업의 특성
-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한 주요 주주, 주요 경영진 및 내부감시기구의 태도에 관한 정보 또는 내부통제환경에 대한 정보

-	회사가 법인의 업무보수를 낮추는 데 적극적인지 여부
-	회사가 부적절하게 업무수행 범위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
-	회사가 자금세탁이나 기타 불법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사항 등
-	당 법인을 선임한 이유와 이전의 회계법인을 재선임하지 않은 이유
-	계약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회사 경영진의 이해 내용

외부감사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에 의해 감사업무를 수임하게 된 경우에도, 당 법인은 업무의 수용과 유지 정책에 대한 위험평가절차는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다만, 위험평가절차 결과, 감사인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업무를 수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는, 품질관리실에서 적절한 업무파트너를 배정하며, 해당 고객 또는 업무에 대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감사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업무의 해지

계약기간의 종료 및 지급불이행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리스크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업무수행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 또는 거래관계의 해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담당이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실과 상황에 따라 법인이 취할 적절한 조치에 관해서 고객회사의 최고경영자 및 내부감시기구와 토의
-	업무 또는 거래관계 모두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동 해지사실과 그 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최고경영자 및 내부감시기구와 토의
-	업무 또는 거래관계를 해지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규제기관에 해지사실과 그 이유를 보고해야 하는 전문적 기준 및 법규상의 요구사항이 있는지 고려
-	관련된 유의적인 문제와 수행한 자문의 내용, 이에 따른 결론 및 그 결론의 근거를 문서화

4. 인적 자원

가. 품질관리기준 구축·운영 현황

(1)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 보유

1) 채용

구성원의 채용은 법인 취업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직원의 채용시기와 채용인원은 대표이사가 결정
-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할 수 있음
- 법인은 직원이 연령, 학력, 자격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또는 은폐하여 채용되었을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법인은 직원의 모집, 채용, 배치, 승격, 승진, 정년 및 해고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며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함

2) 교육훈련

법인의 명성과 임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인의 방침 및 제반 법규의 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감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 실시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실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연수규정에 따라 구성원의 계속적 교육훈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인의 감사교육계획,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강사훈련 및 관리, 교육이수 및 운영관리, 예산관리, 교육평가 및 교육관련 감리대응 등 감사교육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실은 법인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절차와 방침 및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모든 임직원에게 적절히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하여 사업부 및 개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소속회계사는 연간 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의무 이수 시간에 미달한 경우 평가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실은 한국공인회

계사회에 소속회계사의 교육이수 현황을 요청하여 미이수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 이수내용을 관리하고 회계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1인당 평균 교육시간)

(단위 : 시간)

구분	2021(당기)	2020(전기)	2019(전전기)
총 등록공인회계사	49	50	48
회계감사 사업부문 등록공인회계사	50	50	48

* 당 법인의 경우 별도의 회계감사 사업부가 구분되지 않으며, 연중 업무 투입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업무팀의 배정

1) 업무수행이사

품질관리실장은 해당 역할을 수행할 적절한 역량, 적격성, 권한 및 가용시간이 있는 담당이사에게 각 인증업무별 수행책임이 배정되도록 법인규정을 제정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 품질관리실장은 감사업무 담당이사가 등록된 이사인지를 확인
- 인증업무가 감사업무인 경우 각 위험에 따른 업무관리지침에 따라 담당이사를 선정
- 과도한 감사업무의 배정을 막기 위해 감사담당이사의 감사가능 회사의 수를 제한
- 특정이사의 업무부담이 수행가능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업무담당 이사를 교체 가능
- 품질관리실장은 감사업무 담당이사의 독립성을 확인

2) 업무팀

담당이사는 인증업무 수행팀원 각각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고객회사와의 독립성 준수 확인을 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인증업무 수행조서의 일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인증업무 수행팀원 배정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절한 훈련과 참여를 통해 습득한 유사한 성격과 복잡성을 가진 업무에 대한 이해와 실무경험
- 전문직 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 관련된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 등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
- 의뢰인이 속한 산업에 대한 지식
-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대한 이해

나. 임·직원 성과평가체계(평가, 보상 및 승진)

(1) 성과평가

당 법인은 사원의 성과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성과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업무수행이사의 성과평가기준은 "감사업무수행이사 평가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전체 성과 평가지표의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감사팀원은 품질관리, 소속사업부 정성평가, 교육 및 연수 등의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감사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감사품질관련 사항을 전체 성과 평가지표의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상

매년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급 지급 및 승진등의 심사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3) 승진

승진심사는 연1회 실시되며,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담당이사가 평가 후 품의하고, 내부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있습니다.

- 직전승진일
- 최근 3년간 성과평가결과
- 상위직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5. 업무의 수행

가. 품질관리기준 구축·운영 현황

(1)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 제공

1) 업무수행품질의 일관성

감사품질 및 업무수행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감사업무에 대하여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배포한 외부감사용 Audit Guide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한 모든 감사업무는 감사조서 문서화 시스템(Audit Lobby)을 사용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부 본부장과 담당이사는 관련법규 및 전문직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격한 업무수행팀을 구성하고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품질관리실에서 배포한 표준조서를 사용하여 수행되며, 체크리스트를 통해 중요 감사절차의 누락 및 미비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2) 감독책임

담당이사는 다음과 같이 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업무 진행과정에 대한 상시 점검
- 인증업무수행팀의 역량과 적격성 여부 확인
- 인증업무를 완수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점검
- 인증업무의 지시사항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 인증업무가 계획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인증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유의적 문제에 대처하고 그 유의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계획된 감사계획 중 일부를 수정하여야 할지에 대한 고려
- 자문이 필요하거나 숙련된 인증업무전문가의 판단을 요하는 문제의 파악

3) 검토책임

담당이사는 인증업무 단계별로 인증업무에 투입된 시간 및 업무결과를 파악하여 감사업무실시내역 상 시간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집계되고 업무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업무품질관리검토

1) 업무품질관리검토의 기준

품질관리실장은 모든 상장회사의 감사에 대한 품질관리 검토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 전에 해당업무의 품질관리의 검토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감사를 제외한 기타 업무(검토업무, 비상장회사의 감사 업무,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서비스)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검토가 요구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다음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공 이해관계의 정도 등 업무의 성격
- 해당업무에 관련된 비일상적 상황이나 위험의 존재
- 법규상 품질관리의 검토가 요구되는지 여부

2)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

품질관리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결론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검토자의 검토가 완료된 후에 보고서가 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검토자는 감사수행 단계별로 적시에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감사계획단계

- 감사계획단계에서 식별된 유의적 사항에 대하여 업무수행이사와의 논의하고 독립성에 대한 평가, 중요성 결정, 감사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결정에 대한 기타의 문서, 현재까지의 유의적 판단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사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감사문서를 선정하여 검토합니다.
- 감사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미해결 사항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항들 혹은 복잡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적합한 자문이 수행되고, 그러한 자문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이 적절하게 문서화되었음을 확인합니다.

② 감사종료단계

- 식별된 유의적 사항에 대하여 업무수행이사와 논의하고 유의적 판단과 관련된 모든 사항, 중요한 결정에 대한 기타의 문서, 초기에 수행한 감사팀의 독립성 평가에 대한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감사 문서를 선정하여 검토합니다.

- 감사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미해결 사항은 없었으며, 의견의 차이가 있는 사항들 혹은 복잡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적합한 자문이 수행되고, 그러한 자문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이 적절하게 문서화되었음을 확인합니다.

3)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적격성 기준

품질관리실장은 개별 인증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검토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심리역의 객관성이 손상되는 경우 품질관리심리역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4)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

품질관리심사역은 다음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품질관리 검토정책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수행
- 품질관리의 검토는 보고서발행일 이전에 완료됨
- 품질관리심사역은 인증업무수행팀이 내린 유의적인 판단과 결론에 배치될 수 있는 미해결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5) 의견의 차이

인증업무수행팀 내부의 전문가적 판단의 차이는 품질관리실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차이의 해결 내용은 적절하게 문서화 되어야 합니다.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심사역(외부 자문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3) 자문

품질관리실장은 구성원들에게 내부전문가 의견의 권한의 정도와, 내부전문가와 의견이 대립될 때 어떤 절차로 의견대립을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 내부에 적절한 자문을 위한 인적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외부의 자문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타 회계법인
- 전문가단체나 규제기관
- 품질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상업적 단체

한편, 외부자문 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외부의 자문 제공자가 자문목적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업무문서화

1)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완료

당 법인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감사업무수행이사는 사업부 본부장의 감독과 책임 하에 감사업무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조서 및 매뉴얼 감사조서를 감사조서시스템(Audit Lobby) 및 법인의 조서창고에 각각 취합완료(Archiving)를 위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실장은 취합 완료되어 제출된 전자조서 및 매뉴얼 감사조서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집니다.

2) 업무문서의 보존

감사조서 등의 보존기간은 관련 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최소 8년으로 하며, 보존기간은 감사 등 업무종료시점부터 기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8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취합완료된 매뉴얼 감사조서는 독립된 법인의 조서창고에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관하고 이후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동 장소로 이관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감사조서 등의 보존장소에는 보존시설과 시건장치 및 화재 등 재해예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서식>

공인회계사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인원수	투입시간
수습 공인회계사		7	4,514
등록 공인 회계사	1년 미만	9	3,418
	1년 이상 ~ 3년 미만	4	3,592
	3년 이상 ~ 5년 미만	19	11,097
	5년 이상 ~ 10년 미만	69	55,712
	10년 이상 ~ 15년 미만	39	29,403
	15년 이상	52	44,390
합계		199	152,126

다.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관리체계

당 법인은 업무수임시 업무성격, 고객 특성, 지정여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 위험을 평가하며 그 결과 High Risk(매우 높은 위험), Risk A(높은 위험), Risk B(보통수준의 위험), Risk C(낮은 위험)로 평가합니다.

High Risk(매우 높은 위험) 및 Risk A(높은 위험)로 분류된 감사업무의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당이사

품질관리실장은 매년 당 법인의 품질관리 평가 점수, 감독당국 등으로부터의 조치, 최근 2년 이내 Risk A 업무 담당 경험, 업무품질관리검토제도에 대한 이해 및 참여, 한공회 CPD 교육이수 및 법인 필수교육 이수여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이사 POOL을 선정합니다.

그룹장은 High risk(및 Risk A) 로 식별된 감사업무에 대하여 상기 적격이사 POOL에서 독립성, 산업에 대한 이해, 기준 및 관계 법규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업무수행이사를 선정합니다.

(2) 감사업무의 수용과 유지 결정

High Risk(및 Risk A)업무의 수용과 유지 여부는 전문직 규정 및 관계법규, 법인 품질 관리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적정성에 대해 품질관리실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업무수행팀

품질관리실장은 매년 감독당국 등으로부터의 조치, 최근 3년 이내 Risk A 업무 담당 경험, 법인의 내규 위반 여부, 품질관리실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실무책임자 POOL을 선정합니다.

감사업무수행이사는 상기 적격실무책임자 POOL에서 독립성, 산업에 대한 이해, 기준 및 관계 법규에 대한 이해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업무팀을 구성합니다.

감사팀은 감사업무수행이사 포함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된 감사팀 인원의 다른 업무를 고려하여 충분한 감사투입시간이 확보되는지(표준감사시간 준수 여부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감사업무팀을 구성합니다.

(4) 위험관리회의

High Risk로 분류된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위험관리회의를 개최합니다. 위험관리회의에서는 해당업무의 위험을 High로 분류하게 된 제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동 위험요인에 대한 감사팀의 대응방안이 감사계획에 반영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계획된 감사업무절차 수행결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감사보고서에 표명된 감사의견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계획서 및 감사결과요약서 등 주요 문서화된 자료를 기초로 업무수행이사와 품질관리실장이 토의하는 등 해당 위험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절차를 수행합니다.

High Risk로 분류된 업무는 업무수행기간 중1회 이상 위험관리진행상황을 보고 및 토의하는 위험관리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감사업무수행이사, 품질관리실장이 참석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6. 모니터링

가. 품질관리기준 구축·운영 현황

(1)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1)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평가 (주기적 검사)

사후품질관리검토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 법인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구분하고, 사후품질관리검토는 연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중 일부 항목은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모니터링 절차 수행자 선정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은 품질관리실장과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이 있는 구성원 등이 수행합니다. 품질관리실장은 모니터링 업무의 목적 상 필요 시 모니터링 실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식별된 미비점에 대한 평가, 커뮤니케이션 및 해결

법인의 경영진은 발견사항의 해결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와 함께, 부정적인 발견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예, 합의된 법인의 "개선 계획")의 개발과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계획은 적절한 개선책과 해당 개선책의 수행 책임자 및 사후품질관리 검토결과 문서화된 권고사항의 실행시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후품질관리 검토 발견사항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법인의 경영진은 발견사항의 근본원인 파악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고충과 진정

불평과 주장에 대한 조사는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고,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위가 있는 이사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도 조사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법인의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설계상 또는 운영상의 미비점이나, 구성원들이 품질관리시스템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품질관리실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품질관리시스템의 문서화

모니터링 실시자는 조사대상 업무의 선정 등 모니터링 절차와 내용을 문서화하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법인의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 평가 및 그 결과를 추가로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전문직 기준과 규제기관 및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 사후품질관리 검토 절차가 적절히 설계되고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 감사보고서가 적절하게 발행되기 위하여 당 법인의 품질통제정책과 절차가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
- 발견된 미비점의 식별과 이러한 미비점의 영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및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대략적인 기준

나. 수습공인회계사가 참여한 감사업무에 대한 관리체계

감사수행팀 구성 시 수습공인회계사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 감사수행이사 및 담당회계사가 해당 감사업무에 대하여 사전 회의를 통해 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사전심리 시 품질관리실 심리역은 수습공인회계사의 담당 업무에 대하여 주의깊게 검토하고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합니다. 또한, 해당 수습공인회계사의 감사투입시간은 수습공인회계사 투입시간으로 입력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심리 실시 현황 및 관련 심리결과문서 보관정책

1) 품질관리실은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 발간 이후에 수행되는 감사조서의 Review 및 법인의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사후심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감법에 의한 감사보고서는 필수 사전심리대상이며, FY2021 감사업무에 대한 사전심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사대상회사	감사보고서 발행현황	사전심리 실시현황
	유가증권	7	7

구분		감사대상회사	감사보고서 발행현황	사전심리 실시현황
개별재무제표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코스닥	59	59
		코넥스	3	3
		기타사업보고서	6	6
	일반		291	291
	합계		366	366
연결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유가증권	7	7
		코스닥	40	40
		코넥스	1	1
		기타사업보고서	4	4
	일반		30	30
	합계		82	82

사후심리는 외감법상 감사업무를 수행한 모든 이사가 담당하는 감사업무 중 1개 이상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FY2021 감사업무 중 34개 사에 대하여 사후심리를 실시한 결과 중요한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사전심리 시 감사보고서의 본문, 특기사항의 내용, 감사보고서의 체계, 감사조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품질관리점검표를 작성하여 기록하고 문서로 보관합니다.

사후심리 수행내역은 사후심리 수행 년도별로 문서화하여 보관합니다. 사후심리점검표, 사후심리 시 징구하여 검토한 자료, 사후심리 시 발견한 사항 및 기타 사업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며, 수행내역은 3년간 품질관리실에 보관하고 3년을 초과한 수행내역은 폐기합니다.

7.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가. 주식거래 관리시스템 현황(시스템명 포함)

법인은 더존에서 개발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iU)과 그룹웨어(Bizbox Alpha)를 운영하고 있으며 ERP iU에서 주식거래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RP iU에서 관리되지 않는 정보는 이메일 정보 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품질관리실이 별도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모든 회계사는 주식거래 현황을 주식거래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실에서 신고내역의 완전성 및 정확성 검증을 위한 요구 시(반기마다)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주식거래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중인 회계사에 대하여 주식거래 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중 29%에 대한 인원을 샘플링하여 증권거래내역 등 신고내역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검증하였으며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V. 인력에 관한 사항

1. 인력 총괄표

(단위 : 명)

사무소	구분	공인회계사					기타직원 (비공인회계사)	합계
		사원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소계		
				등록	수습			
주사무소	상시근무	38	32	147	6	191	130	321
	비상시	-	-	-	-	-	-	-
	소계	38	32	147	6	191	130	321
분사무소	대전	2	2	4	-	6	2	8
	부산	2	2	4	1	7	8	15
	소계	4	4	8	1	13	10	23
합계		42	36	155	7	204	140	344

사원을 제외한 등록공인회계사 155명 중 외감법에 의한 실무수습이 종료되지 않은 공인회계사는 3명입니다.

2. 사원(출자)·이사 현황

가. 이사의 경력 현황

(단위 : %)

연번	성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개업경력	출자비율
1	김명진	대표이사	법인관리	9년 6개월	18년 6개월	6.910
2	김영안	이사	감사 등	3년 11개월	25년 6개월	0.001
3	이영미	이사	감사 등	1년 3개월	15년 10개월	0.990
4	변성용	이사	감사 등	18년 5개월	19년 5개월	4.951
5	김대웅	이사	감사 등	5년 11개월	16년 0개월	0.990
6	최성환	사원	감사 등	5년 1개월	5년 10개월	0.990
7	신해수	이사	감사 등	5년 2개월	24년 2개월	4.951
8	김유생	이사	감사 등	12년 6개월	10년 4개월	0.001
9	이한선	이사	감사 등	19년 2개월	19년 10개월	4.951
10	조경복	이사	감사 등	20년 2개월	20년 7개월	0.990
11	유은중	이사	감사 등	14년 8개월	17년 2개월	0.001
12	노재현	이사	감사 등	5년 9개월	22년 1개월	4.951
13	김연철	이사	감사 등	7년 8개월	12년 4개월	0.001
14	김철규	이사	감사 등	17년 5개월	21년 6개월	4.951
15	김재훈	이사	감사 등	5년 7개월	16년 3개월	0.990

연번	성명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개업경력	출자비율
16	강동우	이사	감사 등	17년 5개월	15년 4개월	4.951
17	정석용	이사	감사 등	18년 5개월	20년 8개월	8.912
18	황인범	이사	감사 등	7년 3개월	20년 10개월	0.990
19	이정희	이사	감사 등	1년 8개월	13년 1개월	0.990
20	김민우	이사	감사 등	1년 9개월	7년 4개월	0.990
21	공익준	이사	감사 등	7년 8개월	9년 1개월	4.951
22	이승현	이사	감사 등	6년 9개월	13년 7개월	0.990
23	서인도	사원	감사 등	1년 10개월	2년 5개월	0.990
24	임현수	이사	감사 등	13년 8개월	16년 0개월	4.951
25	최중혁	사원	감사 등	11년 4개월	16년 9개월	4.951
26	원재훈	사원	감사 등	11년 4개월	16년 7개월	0.990
27	이범석	이사	감사 등	9년 4개월	13년 4개월	0.990
28	신세욱	이사	감사 등	7년 2개월	19년 5개월	0.990
29	신동진	이사	감사 등	3년 9개월	28년 10개월	4.951
30	정호성	이사	감사 등	1년 11개월	15년 10개월	0.001
31	이용석	이사	감사 등	10년 5개월	15년 3개월	4.951
32	손창호	이사	감사 등	5년 11개월	15년 4개월	0.990
33	유성일	사원	감사 등	4년 9개월	16년 7개월	0.990
34	박병규	이사	감사 등	4년 4개월	13년 3개월	0.990
35	송해수	이사	감사 등	6년 0개월	8년 7개월	0.990
36	김도형	사원	감사 등	4년 4개월	11년 3개월	0.990
37	변윤석	이사	감사 등	5년 1개월	13년 3개월	0.990
38	정선호	이사	감사 등	19년 10개월	24년 5개월	4.951
39	이영호	이사	감사 등	19년 10개월	25년 6개월	0.990
40	이재홍	이사	감사 등	15년 2개월	18년 6개월	4.951
41	김홍기	이사	감사 등	1년 8개월	5년 7개월	0.001
42	안해정	이사	품질관리	4년 6개월	15년 4개월	0.001

나. 이사의 보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성명	직위	보수의 종류	보수총액
1	이한선	이사(운영위원회)	근로소득	501
2	공○○	이사	근로소득	719

주) 개별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이사의 징계내역

연번	성명	직위	징계내역	징계일자	비고
1	○○○	이사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유가증권상장법인 및 지정감 사업무 1년 제외 직무연수 6시간	2019.09.25	-
2	△△△	이사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유가증권상장법인 및 지정감 사업무 1년 제외 직무연수 8시간	2020.01.22	-
3	□□□	이사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감사업무 1년 제외 직무연수 4시간	2020.03.11	(주1)
4	xxx	이사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유가증권상장법인 및 지정감 사업무 1년 제외 직무연수 20시간	2020.05.20	-
5	◇◇◇	이사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유가증권상장법인 및 지정감 사업무 1년 제외 직무연수 8시간	2021.02.24	-

(주1) 해당 조치에 대하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성명은 익명처리하였습니다.

3. 공인회계사 변동 현황

(단위 : 명)

사무소명	기초인원	증가	감소	기말인원
본점	137	67	19	185
대전지점	6	1	1	6

사무소명	기초인원	증가	감소	기말인원
부산지점	6	1	1	6
합계	149	69	21	197

4. 소속공인회계사의 경력 현황

(단위 : 명)

사업부문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	합계
회계감사	2	3	14	46	26	37	128
세무자문	-	-	3	5	3	6	17
경영자문	-	1	3	21	12	15	52
기타	-	-	-	-	-	-	-
합계	2	4	20	72	41	58	197

5.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21(당기)		2020(전기)		2019(전전기)	
	인원	보수	인원	보수	인원	보수
회계감사	137	20,929	113	17,219	82	10,783
세무자문	143	10,043	99	5,630	84	7,623
경영자문	58	9,462	45	6,177	49	6,640
기타	6	257	5	189	3	104
합계	344	40,691	262	29,215	218	25,150

주) 인원은 사업연도말 현재 기준이며, 보수는 사업연도 중 발생한 보수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금액(급여, 상여, 퇴직급여, 기타 급여성계정)과 일치시킬 것

6. 전문자격증 소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문자격증명	인원
	세무사(세무대리업무 포함)	196
	외환관리사	1
	투자자산운용사	4

구분	전문자격증명	인원
국내	금융자산관리사	1
	선물거래상담사	1
	증권투자상담사	1
	공인중개사	4
국외	AICPA	6
	CISA	2
	CFA	1
	CBCP	1
	PMP	1
합계	-	219

V.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현황

1.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초잔액	당기적립액	당기사용액	기말잔액	당기사용내용
손해배상준비금	5,853	-	-	5,853	-
손해배상공동기금	357	15	58	314	기간경과에 따른 반환
계	6,210	15	58	6,167	-

2.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단위 : 원)

보험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기간	연간보험료	보험금		보장범위
				총 보상 한도	1사고당 보상 한도	
DB손해보험	회계사 배상책임보험	2021.06.20 ~ 2022.06.20	221,712,000	15,000,000,000 1,000,000,000 2,000,000,000	10,000,000,000 200,000,000 1,000,000,000	- Financial Auditing - Tax&Bookkeeping - Administrative Fines and Penalties
DB손해보험	회계사 배상책임보험	2021.08.10 ~ 2022.08.10	16,575,000	3,000,000,000	3,000,000,000	Financial Auditing

VI.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리결과

1.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일자	조치자	관련회사			감리지적사항	조치내역	
		회사명	구분	결산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19.09.25	증권선물위원회	(주)아이피몬스터	코넥스상장	FY2017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2. 당해회사 감사제한 2년	공인회계사 1인 1.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2.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 및 지정감사업무제한 1년 3. 직무연수 6시간 공인회계사 1인 1.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2. 직무연수 4시간
2020.01.22	증권선물위원회	(주)한일진공	코스닥상장	FY2016, FY2017	1. 파생상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2.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2. 당해회사 감사제한 2년 3. 과징금 90백만원	공인회계사 1인 1.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2.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 및 지정감사업무제한 1년 3. 직무연수 8시간 공인회계사 1인 1.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2.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 및 지정감사업무제한 1년 3. 직무연수 6시간
2020.03.11	증권선물위원회	(주)에스에프씨	코스닥상장	FY2016, FY2017	1.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의 감사절차 소홀 2. 담보제공내역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3. 인수약정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2. 당해회사 감사제한 1년	공인회계사 1인 1.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2. 지정감사업무제한 1년 제외 3. 직무연수 4시간
2020.05.20	증권선물위원회	고양일산아이파크(주) 등 46개사	기타	FY2015 ~2017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1.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2.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1인 1. 당해회사(12개사) 감사업무제한 1년 3.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 및 지정감사업무제한 1년 4. 직무연수 20시간 공인회계사 1인 1.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개사 4년, 63개사 2년, 95개사 1년) 2. 주권상장법인 및 지정감사업무제한 1년 3. 직무연수 20시간 공인회계사 1인 1. 당해회사(155개사) 감사업무제한 2년 2. 주권상장법인 및 지정감사업무제한 1년 3. 직무연수 20시간
2021.02.24	증권선물위원회	주식회사 기가레인	코스닥상장	FY2014 ~2016	1.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2.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2.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1인 1.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2.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 및 지정감사업무제한 1년 3. 직무연수 8시간

조치일자	조치자	관련회사			감리지적사항	조치내역	
		회사명	구분	결산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2인 1.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2.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 및 지정감사업무제한 1 년 3. 직무연수 6시간

상기 감리조치 중 (주)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조치 1건에 대하여 집행정
지가처분신청 및 해당 신청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2. 품질관리 감리결과

구분		조치일자	개선권고사항	개선권고 이행상황	
품질관리 구성요소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	-	
		-	-	-	
	윤리적 요구사항	-	-	-	
		-	-	-	
	업무의 수임과 유지	-	-	-	
		-	-	-	
	인적자원	-	-	-	
		-	-	-	
	업무의 수행	-	-	-	
		-	-	-	
	모니터링	-	-	-	
		-	-	-	
	개별 감사보고서 관련		-	-	-
			-	-	-

Ⅶ.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소송 현황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소일	원고	피고	사건번호	관련회사	제소이유	배상금액	소송결과
2017.12.07	홍익에프앤드씨	이촌회계법인	2017가합113625 손해배상(기)	와이즈파워	손해배상	-	피고 승소 종결 (2020.01)
2020.05.14	이촌회계법인 외 1명	증권선물위원회	2020가11467	에스에프씨	집행정지	-	인용 (2020.06)
계	-	-	-	-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 회계법인과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은 총 8건(피고 : 5,172백만원, 원고 : 230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당 회계법인이 피고인 소송은 5건(5,172백만원)이며, 당 회계법인이 피고로 진행중인 주요 소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원 고	제소된 금 액	진행경과			사건내용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에스에프씨 주주	250,000	○			손해배상
에스에프씨 주주	1,115,798	○			손해배상
에스에프씨 주주	2,868,980	○			손해배상
에스에프씨 주주	735,766	○			손해배상
에스에프씨	201,000	○			손해배상